

# 2024년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 연장공고

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‘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’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2월 19일  
용인시산업진흥원장

## 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통해 용인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
  - 사업기간: 2024. 2. ~ 11. (수시모집,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)
  - 지원내용: KOTRA ‘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’ 이용비용의 80% 지원
  - 지원규모: 00개사 (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)
  - 지원금액: 기업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(공급가액 기준, 부가세 제외)
    - 총 서비스 이용비용의 80%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, 기업부담금 20%
    - 지원금액 예시
      -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100만원인 경우, 지원금 80만원(80%) 지급
      -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250만원인 경우, 지원금 200만원(80%) 지급
      -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300만원인 경우, 지원금 200만원(최대 한도) 지급
- ※ 부가가치세,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 제외

## 2 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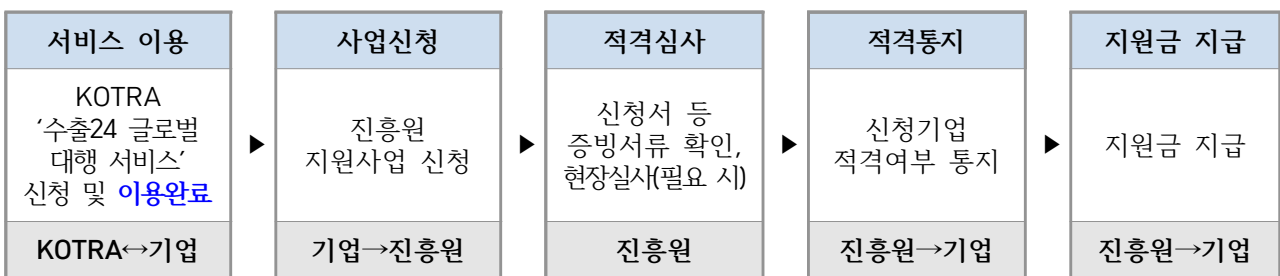
- 지원대상: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
  -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(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)
  - 2024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‘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’ 를 신청하고,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기업
- 신청횟수: 연 1회 신청가능

## □ 제외대상

- 2024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
- 진흥원이나 유관기관,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(아이디어)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(동일년도에 동시 수혜불가)
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(법인/개인)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
-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기업
-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- 신청기업 명목이 아닌 에이전트(대리인)등의 명목으로 참가하는 경우
-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-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
- 기타 관련규정,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
-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회수

## 3 지원금 지급

### □ 추진절차



### □ 지급방법

- 신청서,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검토, 현장실사 진행 등을 통해 신청 기업 적격여부 판단
- 신청기업에게 적격여부 통지 및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접수
- 지원금 지급 (지급처: 지원기업에게 직접지급)
- 부가가치세, 수수료,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 불가

## 4 신청방법

---

- 신청기간: 2024. 2. 19. ~ 11. 30. (수시모집,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)
  - ※ 예산 소진 시,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접수를 마감하며, 신청 순서대로 선정 예정)
-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 (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, [ybs.ypa.or.kr](http://ybs.ypa.or.kr))
  - ※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, 방문/메일/우편 접수 등 불가
  - ※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
  - ※ 사이트 오류 등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불가,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
- 문의처
  - 수출지원팀 이현주 책임(031-323-4676, [iamlhj@ypa.or.kr](mailto:iamlhj@ypa.or.kr))

## 5 유의사항

---

- 유의사항
  -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
  - 서류 접수 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  -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
  -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, 중복 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
    - ※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
  -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세, 송금(이체)수수료 등 지원 불가
  -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
  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(붙임3 참고)

## 6

## 제출서류

※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,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
· 제출서류 파일명: 기업명\_제출서류명 (예시: A주식회사\_사업자등록증)

| 구분 | 구비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수   | 비고  | 발급처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|
| 1  | 사업자등록증명원<br>(필수), 공장등록증<br>명원(해당시) | 1부   | -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<br>- 공장이 용인시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<br>명원(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) 추가<br>제출                      | 국세청 홈택스,<br>관할세무서  |
| 2  | 중소기업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 | -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 |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<br>( <a href="https://sminfo.mss.go.kr">https://sminfo.mss.go.kr</a> ) |
| 3  | 개인정보이용<br>및 제공 동의서                 | 각 1부 | - 제공서식 활용 (PDF 형식)<br>(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필수)   | 진흥원 양식   |
| 4  | 확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 | - 제공서식 활용<br>(대표자 서명 후 제출 / PDF 형식)   | 진흥원 양식   |
| 5  | 지방세 · 국세<br>납입증명서                  | 각 1부 | -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<br>(PDF 형식)  | 국세청 홈택스,<br>정부24   |
| 6  | 사업완료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 | - 작성 후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  | 진흥원 양식   |
| 7  | 수출24 글로벌<br>대행 서비스 견적서             | 각 1부 | -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견적서 일체<br>※ 이용한 모든 서비스 견적서 제출 (PDF 형식)<br>(서비스 9건 이용 시, 견적서 9건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|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<br>(KOTRA)  |
| 8  | 수출24 글로벌<br>대행 서비스<br>결과보고서(산출물)   | 각 1부 | -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결과보고서<br>※ 이용한 모든 서비스의 KOTRA 무역관 결과<br>보고서(산출물) 제출 (PDF 형식)<br>(서비스 9건 이용 시, 산출물 9건 제출) |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<br>(KOTRA)  |
| 9  | 이체증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각 1부 | - 이체확인증, 현금영수증 등 수출24 글로벌<br>대행 서비스 대금 이체 증빙 일체 제출  | -  |
| 10 | 수출24 글로벌<br>대행 서비스<br>신청 증빙        | 1부   | - myKotra 내 신청완료 사업 → 서비스<br>신청일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화면 캡처<br>(PDF 형식)   |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<br>(KOTRA)  |

※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

별첨 중소기업 범위(중소기업기본법) 1부. 끝.

## 중소기업기본법

[시행 2024. 1. 9.] [법률 제19992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 <개정 2011. 7. 25., 2014. 1. 14., 2015. 2. 3., 2016. 1. 27., 2018. 8. 14., 2019. 12. 10., 2020. 10. 20., 2020. 12. 8., 2020. 12. 29.>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
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
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
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